

2020학년도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학사제도 변경 내용

□ 석사학위 학위 논문 취득 방법

1. 개요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졸업요건 중 석사학위 논문제출 필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방법으로 학위 논문 작성 이외에 학위 작품 제작·발표와 연구 논문 작성을 추가로 시행할수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에 대한 다양성을 충족하고자, IT법학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혹은 연구논문(논문대체)을 선택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구 분	학위 취득 방법
학위논문	1.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학위논문 작성 → 심사·통과
연구논문 (논문대체)	1. 39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임)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연구논문 작성 → 심사·통과

* 연구논문의 정의

연구논문이란 전공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으로, 작성양식은 학위논문과 같으나 결과물을 학위논문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고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도서관)에 제출하지 않는 학위논문 대체 방안을 의미한다

3. 상세 내용

가. 학생의 학위 취득 방법 선택 및 변경

- 1) 2학기 말 학위취득 방법(학위논문, 연구논문)을 선택하여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출력 후 지도교수·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별첨1 참조)
- 2)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함.

라. 학위 취득 방법별 심사 절차 및 제출된 결과물 관리와 저장

1) 학위취득 방법별 심사절차

절 차	학위논문	연구논문
자격기준	· 자격시험(종합학력, 외국어) 통과 · 연구윤리교육 이수	· 자격시험(종합학력, 외국어) 통과 · 연구윤리교육 이수
연구계획서	과정이수 및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고) 지도교수에게 작성·제출	과정이수 및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고) 지도교수에게 작성·제출

논문작성	학위논문 작성	연구논문 작성
예비발표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반드시 시행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반드시 시행
심사신청	웹정보에 심사신청 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 논문심사비 납부	웹정보에 심사신청 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 논문심사비 납부
심사위원 인원	3인 (지도교수 + 교내교수 2인)	2인 (지도교수 + 교내교수 1인)
심사	심사용 학위논문	심사용 연구논문
합격 여부 판정	심사위원 3/2 이상의 찬성	심사위원 3/2 이상의 찬성
논문제출 및 등록	·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 겉표지 하드카바로 제본 ·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5부 제출	·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 겉표지 소프트카바(흰색)로 제본 · 제본된 연구논문 1부 및 국문 파일을 학과로 제출

4. 시행시기 : 2020학년도 2학기 부터

연계과정 운영제도 변경

1. 주요 내용

가. 연계과정 신청 시기 조정

1)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개 학기 이내 졸업예정자	3개 학기 이내 졸업예정자

2) 사유 : 우수한 학부학생을 선점하여 대학원으로 유치하기 위함

나. 석·박사 통합과정 수업연한 1개 학기 단축

변경 전	변경 후
· 7학기 (전공 60학점, 연구지도 18학점)	· 6학기 (전공 60학점, 연구지도 15학점) ※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수료 전공 학점인 60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연계과정 신청자가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6학기까지 전공 60학점을 취득한 경우

연구지도학점을 18학점에서 15학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하여 6학기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계과정 수료자의 연구등록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수료 이후의 학기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마다 최장 10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 이 제도를 **연계과정으로 수료한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하여 원하는 경우 정규 4학기에서 단축된 1개 학기만 연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시기 :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 종합학력시험 변경 시행

1. 개요 : 종합학력시험 신청 대상자 기준 과 시행방법을 학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시행하고, 면제기준 또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장려하고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전면 폐지

2. 주요 내용

가. 종합학력시험 신청 대상자 기준과 시행방법 변경

1) 신청 대상자 기준 변경

과 정	변경 전	변경 후
석사	전공 24학점 이상 취득자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자
박사	전공 30학점 이상 취득자	전공 27학점 이상 취득자
통합	전공 60학점 이상 취득자	전공 45학점 이상 취득자

2) 시행 방법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과목	· 석사 : 전공 2과목 이상 · 박사 : 전공 4과목 이상	· 석사 : 전임교원 의 과목 중 2개 과목 · 박사 : 전임교원 의 과목 중 4개 과목 ※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
방법 및 절차	· 필기시험 : 학과 전임교원 당 1과목 출·채점	· 필기시험 : 동일 · 구두시험 추가 :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
합격점수	70점 이상	80점 이상

나. 면제기준 및 시행방법 변경

1)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 폐지

학과별로 성적 평균 90점 이상, 성적 평균 80점 이상 등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 전면 폐지**

하되,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면제기준 장려

2) 면제기준을 학과별 내규로 관리

-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작 역할, 게재인정 일자 등 면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
-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내규를 공지할 예정임.

3. 시행시기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 외국어시험 변경 시행

1. 주요 내용

가. 시험과목 및 면제

1)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자격시험 과목 : 영어, 한국어 2개 과목만 시행

① 내국인 학생 : 영어

② 외국인 학생 :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 선택

※ 영어 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만 가능

2) 외국어 자격시험 면제

가) 공인어학시험

① 내국인 학생 :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

② 외국인 학생 :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으로만 면제.

※ 한국어 성적은 TOPIK 5급 이상 임. 단, 입학 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임.

나) 해외 수학(연수) 국가

① 내국인 학생 :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단 학과에서 영어권 국가외 언어를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도 면제 가능

② 외국인 학생 :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가능

나. 과목수

2018학년도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안

2. 시행시기 : 2018학년도 1학기부터